

# 지방의원 윤리강령 시급

## ‘겸직금지’ 확대로 유급제 취지 살려야

광역·기초의원들의 ‘겸직금지’를 위한 윤리강령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그동안 무브수 명예지임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겸직을 허용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유급제 전환된 만큼 겸직을 금하고 제3자를 통한 공사참여등 이권 개입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들의 겸직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윤리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게 일고있다.

대구참여연대가 최근 대구시·경북도의원을 대상으로 겸직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의회의원들은 29명 가운데 17명이, 경북도의원은 55명 가운데 43명이 의정활동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대구시의원의 경우, 약국운영·복지단체 이사 등 보건복지분야에서 일하는 의원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부동산 관련업이 3명, 겸임교수 등 교육계가 3명 등의 순이었다.

도의원들은 건설·부동산 관련업과 농·어업 종사자가 각각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상임위원회 활동이 자신의 직업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를 의식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교육청과 문화체육국을 담당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한 시의원은 스포츠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농정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비육보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시의회에서는 2명, 도의회에서는 10명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비리 막기 위해 겸직을 허용해 왔지만, 사실 유급제 이후 겸직으로 인한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의원의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하며, 의원의 자기집권과 윤리강령 등의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항시의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은 겸직금지 강화를 위한 조례제정에 다소 소극적이다.

포항시의회 한 의원은 “유급제 시행에 따른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의 당의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다”면

서 “그러나 겸직금지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등의 문제로 조례제정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면금지 시행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의 해당 상임위배제 등의 제도적 보완은 가능하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전면 금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것”이라며 공적업무와 사적업무의 이해충돌을 우려했다.

한편 지방의원들의 겸직금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도 규정돼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있다.

관련법규에는 ‘지방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을 양수하거나 관리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상 대표가 아니거나 규정된 자치단체외 기관과의 영리활동을 규제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혀 있는 상임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권종락기자  
kwonjr@kbmaeil.com